

## 충청북도광산지역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광산지역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(적용시한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